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우리아이자립펀드 비과세 혜택 부여(임광현의원안) ..... | 3 |



## I. 개요

###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56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20인
- (2) 제 안 일 : 2024. 6. 17.
- (3) 회 부 일 : 2024. 6. 27.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저출생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였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3%)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중한 자녀 양육부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우리아이자립펀드 비과세 혜택 부여(임광현의원안)

| 현 행     | 임광현의원안                                                                                                                                                                                                                                                                                                     |
|---------|------------------------------------------------------------------------------------------------------------------------------------------------------------------------------------------------------------------------------------------------------------------------------------------------------------|
| □ <신 설> | <p>□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br/>(안 제91조의25 신설)</p> <p>*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55)」의 의결을 전제로 함</p> <p>○ 비과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li> <li>*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li> <li>- 보호자적립금에 대한 증여세</li> </ul> |

\* 임광현의원안 2024. 6. 17. 제출(의안번호 556)

□ 개정안은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55호)<sup>1)</sup>」의 의결을 전제로,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 대하여 ① 가입자인 아동이 18세가 되는 날까지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② 보호자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적립한 보호자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55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 심사경과

2024. 6. 17. 임광현의원 등 19인 발의

2024. 6. 18.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4. 7. 16.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국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해당 아동 명의의 계좌(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보호자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아동은 18세 이후부터 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55호)」 주요내용]

|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신설)  |                                                            |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
| 지원 방식            | 아동 계좌에 적립                                                  |
| 정부적립금            | 월 10만원                                                     |
| 보호자적립금           | 정부적립금 적립된 달에 한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                               |
| 인출 가능 시점         | 18세 이후                                                     |
| 중도 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br>(아동의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출 가능)  |
| 정부적립금 지급 중지 및 환수 |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및 결정 철회 등                           |
| 사업자              |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
| 사업자의 계좌 관리 대상    | 적립금(정부+보호자+운용수익 및 이자)                                      |
| 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자격, 등록 및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의 경우 가입자 보호조치 및 업무 이전에 관한 사항 규정 |
| 정부의 책무           | 사업자 평가,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지원, 아동 대상 교육 등 책무 규정                  |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24. 7.)

□ 개정안은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신설을 전제로 펀드 운용에 따른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보호자적립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부  
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sup>2)</sup>이 2016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으로 나타나는 등<sup>3)</sup>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처럼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  
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  
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초자산의 형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1.05  | 0.97  | 0.91  | 0.84  | 0.81  | 0.78  | 0.72  |

자료: 통계청

2)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3)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OECD평균 |
|------|------|------|------|------|------|--------|
| 0.81 | 1.66 | 1.53 | 1.58 | 1.80 | 1.30 | 1.58   |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본인의 소득활동 및 비과세 자격 충족을 전제로 하는 다른 자산형성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및 소득수준이 상이한 가구간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sup>4)</sup>.

둘째, 증여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현행 증여재산 공제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과세 혜택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도입되어 혼인일 및 자녀의 출생·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여세 공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자소득이나 펀드 운용 실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0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보호자적립금을 매월 최대 금액(10만원)으로 납입한 가구와 정부적립금만 수령한 가구 간 비과세 증여 금액 차이가 기본공제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2,16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

---

4) 현행법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연 600만원 한도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연 840만원 한도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에 따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계좌명의자의 소득활동이나 별도의 자격기준 충족여부와 상관 없이 국가와 부모가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저축여력이 있는 가구에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154 |
|--------------|